



보 도 자 료

2020년 5월 21일(목) 조간
부터 보도가능합니다.

담당부서

기획실

연락처

실장 박상광(02-525-9077)

부장 김진석(02-525-9082)

카드사, 법인회원에 캐쉬백 혜택 대폭 축소

- 금융당국의 카드사 이익보전, 소비자 혜택은 외면 -

-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법인 신용카드 회원에게 제공중인 혜택중 하나인 캐쉬백 혜택을 대폭축소 하고자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
-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고 카드수수료 인상요인을 억제하는 목적으로 현재 카드사별로 1~2%의 캐쉬백을 법인회원에 제공하던 것을 일괄적으로 0.5%로 제한하고자 함
- 카드 이용고객에 대한 캐쉬백 혜택은 카드사의 마케팅 수단으로 일종의 판매장려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캐쉬백 등 이용에 대한 혜택은 전적으로 카드사의 자율적 판단과 각 카드사의 영업전략에 따라 시장자율에 의하여 책정되어야 할 것인바, 금번 규정 개정으로 법인회원의 혜택이 대폭 축소된다면 결국 법인회원의 고객인 일반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것임
- 사실상 법인회원의 원가를 상승시키고 법인회원의 판매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부담을 증가시킴

- 금융당국의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금융당국의 이율배반적 정책**

- 금융당국 및 언론보도에 따르면 8개사의 작년 연간 영업이익의 합계가 2조1452억원(당기순이익 1조 6462억원)으로 작년 3월부터 중소기업 수수료 인하된 이후에도 연간으로는 2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유지되고 있음
- 금융당국은 그 동안 카드사가 수익성 하락 압력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음에도 법인회원들과 법인회원들의 고객인 소비자에게 돌아갈 혜택을 일방적으로 축소하고 나아가 일괄적으로 0.5%로 제한하는 것은 정부가 오히려 기업활동을 제한하고 카드사의 카르텔 형성을 도모하는 비이상적 정책
- 뿐만아니라, 정부 및 지자체도 그간 정부구매카드 표준약정서 등을 통해 카드이용금액의 1%를 캐쉬백으로 제공받고 있었음

○ **공정경쟁 및 시장경제원리 저해**

- 일반적으로 캐쉬백제도는 영업상 마케팅 수단으로 우량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필요적·선택적 방편의 하나이며 각 카드사의 영업환경에 따라 자율적으로 그 한도를 정해야 함이 원칙
- 캐쉬백은 협의적 관점에서는 법인회원의 이익으로 인식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회원의 입장에서는 카드사가 부여하는 혜택을 고려하여 원가를 책정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법인회원의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혜택으로 귀결되므로 단순히 법인회원만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단편적 시각

- 특히 매출액이 높은 자동차제조사 계열 카드사의 경우 제조사이기 때문에 누리는 특별한 혜택으로 인하여 카드시장에서 점유율을 급속도로 확대한 바, 그 결과로 인하여 일반 카드사들은 그 보다 높은 캐쉬백이나 그밖의 혜택을 부여하여 고객을 유치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나 이를 일률적으로 0.5%로 제한한다면 시장은 일반 카드사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없고 자동차제조사 계열 카드사에게만 유리한 구조로 재편되어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큼

* 자동차 구입시 캐쉬백 등 혜택이 동일하다면 일반적으로 자동차제조사 계열 카드를 선호할 것이 자명

(ex. 종전 자사차량 보유자에 대한 할인 제공 등 제조사 계열 장점 부각)

* 미국 등 선진국의 자동차 유통구조는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판매권한을 부여받은 딜러사가 자율적으로 소비자판매가를 정하므로 경쟁구도를 통한 최적의 소비자 판매가가 구현되나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 어디서나 제조사가 정한 일방적인 소비자판매가로 판매되는 형태로 카드사 법인회원인 렌탈법인들은 이점을 활용하여 대규모 차량구입과 캐쉬백 등을 이용하여 일반소비자에게 보다 저렴한 차량과 차량이용서비스를 제공중(내수 경제활성화를 통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

* 캐쉬백과는 별개로 우량 법인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복지기금 출연, 무기명 선불카드 지급, 홍보대행, 인력지원, 전담콜센터 운영, 해외연수 지원, 공항라운지 운영 등을 뒤로한 채 캐쉬백 혜택을 축소하는 것은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님.

- 이에 우리조합은 카드사의 자산건전성을 심각히 훼손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카드사 자율에 맡겨야 할 일종의 판매장려금 성격인 캐쉬백 혜택을 법인회원들에 한하여만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시장자율성을 훼손하고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것임을 호소함. 특히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된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피해는 더욱 크다는 점에서 현행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